

병원약사회지 논문심사규정

제정 2009. 10. 13.

규정 명칭 변경. 개정 2013. 10. 18.

개정 2015. 10. 30.

제1조(목적) 한국병원약사회 정관 제5조 및 병원약사회지발행규정 제19조에 따라 병원약사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개정 13.10.18)

제2조(논문접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13.10.18)

제3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개정 15.10.30)

1. 편집위원회는 투고시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심사가능 논문에 한해 2인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15.10.30)
2. 심사위원은 약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도 선정될 수 있다. (개정 15.10.30)
3. (삭제 15.10.30)
4. (삭제 15.10.30)

제3조의1(심사절차) (신설 15.10.30)

1.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애고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의 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3. 심사위원명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논문의 심사는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신설 15.10.30)

제4조(심사결과)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15.10.30)

1.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각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가. 연구주제의 약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나.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표절한 경우

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라. 심사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마.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결과판정)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한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 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개정 13.10.18)

1.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개정 15.10.30)

2. <수정후 게재가능>와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3. 1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개정 15.10.30)

4.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병원약사회지 투고 및 집필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개정 15.10.30)

5.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수정후 게재가능>과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13.10.18)

1.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 준다.

2.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3. 논문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9. 10.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3. 10.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